

OpenChain-KWG Legal SG 2차 회의

GPL-2.0: 라이선스 경계 문제와 컴플라이언스

2023.12.13.(수)

ETRI 오픈소스센터
책임연구원 박정숙

내용

- 라이선스 경계 문제의 정의
- GPL-2.0 개요
- GPL-2.0 라이선스 분석
- GPL-2.0 경계 문제
- 컴플라이언스 대응

본 발표자료는 아래의 참고자료들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자료»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 교재>,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6월. GPL 원문 이해
- 최진영,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년 8월. 경계이슈 내용 이해
- OLIS,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lid=1004> 경계이슈 내용 이해
- "GPL-2.0 가이드", <https://sktelecom.github.io/guide/use/obligation/gpl-2.0/> GPL-2.0 실무 가이드 참고

경계 문제의 정의

- 경계 문제(Boundary Issue)

- 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범위,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
- 예전에는 “오염(tainting)”이라는 표현을 씀

- 경계 문제의 예

- 예) GPL-2.0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복제/배포하는 경우 프로그램 전체에 GPL-2.0을 적용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던데 내 코드는 괜찮을까?
- 예) Apache-2.0 오픈소스는 특허보복조항이 적용된다던데 내 특허는 괜찮은가?

라이선스 분석 - GPL-2.0 개요

•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
 - ❖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복제하고, 배포하고, 학습하고, 개작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 ✓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 이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당신에게도 특별한 의무를 부과
 - ✓ 각 저작자와 FSF 보호를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제공 안 됨
 - ✓ 소프트웨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취인이 자신이 받은 소프트웨어가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규정
-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원 프로그램을 사유화시키는 위험을 피하고자 함
-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법
 -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설정
 - ✓ GPL-2.0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 GPL 라이선스의 연혁

- GPL-1.0 (1989)
- GPL-2.0 (1991)
- GPL-3.0 (2005)

라이선스 분석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GPL 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 또는 실행할 수 있다(서문 하단)
 - ✓ 복제, 배포 행위 이외에 프로그램을 단순히 이용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는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표시, 워런티가 없다는 표시, 해당 프로그램이 GPL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GPL 원문을 제공하기만 하면 GPL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제1조 전단)
 -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복제물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 가능하고 유료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제1조 하단)
-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파생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등 제1조의 의무와 함께, 수정했다는 사실 및 수정 일자를 명시하고 파생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제2조)
-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 파일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최소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written offer)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제3조)

• 위반 시

- 이상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GPL에 의해 부여된 라이선스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제4조)
- 그럼에도 계속해서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복제, 수정, 배포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제5조)

라이선스 분석 – 세부사항 개요

1. 라이선스의 범위

2. 소스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

3. 소스코드 수정 배포 시 의무사항

4. 오브젝트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

5. 특허권의 취급

6. 라이선스의 버전과 적용

라이선스 분석 - 1. 라이선스의 범위 (제0조 문단2)

- GPL은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복제, 배포, 수정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음
- 파생 저작물의 구성여부는 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

라이선스 분석 - 2. 소스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제1조)

- 이용자는 자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 가능 (어떤 매체로도 가능)
- 복제 및 배포 시 조건
 - 분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며, 보증책임이 없으므로 명시하고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공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의 부재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함
 -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한 비용을 청구 가능하고, 선택사항으로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 리눅스 커널 코드 제공 시 CREDITS 파일을 꼭 챙길 것

라이선스 분석 - 3. 소스코드 수정 배포 시 의무사항

- 이용자는 GPL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음
- 파생저작물(work based on the program)
 - 해당 프로그램, 혹은 저작권법 내에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파생한 저작물, 즉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물
- 파생저작물의 배포 조건(제2조)을 만족시키면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 가능
 - 파일을 수정할 때는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
 -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 다만, 양도받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송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 파생저작물의 배포 조건은 수정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
- 수정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음
- 저작물이 원프로그램에서 파생한 저작물의 일부로서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의 배포에 대해 본 라이선스 규정 적용, 개별적인 부분들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가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
 -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
-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프로그램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놓은 집합물의 경우에 다른 저작물은 GPL-2.0의 적용을 받지 않음

cf) 파생저작물의 범위

- GNU FAQ 참고

GNU FAQ

- 파생저작물인 경우

- 정적 링크

- ✓ GPL로 배포된 SW를 수정하였거나 새로운 SW에 정적 링크시키는 경우, 즉 두개의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스는 GPL임

- 동적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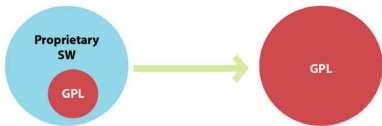
- ✓ 동일한 바이너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적 링크 등의 방식으로 공유주소 영역에서 링크되어 실행되도록 설계된 경우
 - ✓ 플러그인이 동적으로 링크되어 함수를 호출하고 데이터 구조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GPL SW와 함께 링크되어 실행되는 경우

- 파생저작물이 아닌 경우

- 두 개의 프로그램이 pipe, socket, CLI arguments 형태로 통신하는 경우
 - 플러그인이 fork나 exec를 이용하는 경우

cf) 파생저작물의 범의에 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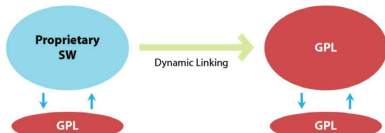
GPL로 배포된 SW를 포함하는 경우 (동일한 Binary)



- 소스파일에 일부 GPL 코드사용
- Static Linking 등 동일한 Binary에 포함

* 바이너리에 GPL 소스코드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바이너리는 GPL이 됨.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든 SW



* 저작자가 특별히 기술한 예외사항이 없는 한 모두 GPL화가 됨.

cf) 리눅스 커널의 라이선스와 적용 범위

- COPYING 파일(리눅스 토발즈의 글)
 - 리눅스 커널이 GPL-2.0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것 명기
 - 리눅스의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user program'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음
- 리눅스 커널 내 모듈
 -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GPL 2.0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GPL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커널 모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조건
 - 커널 모듈 라이선스를 GPL로 선언하지 않아야 함
 - Linux-only 드라이버가 아니어야 함
 - 모듈 내 커널 소스의 일부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대부분의 GPL 오픈소스는 either version of the License, or any later version에 의해 배포되지만 리눅스 커널은 GPL-2.0에 의해서만 배포됨

라이선스 분석 - 4. 오브젝트코드 배포 시 의무사항(제3조)

- 이용자가 GPL 프로그램을 오브젝트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복제 및 배포 가능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함.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 해당 소스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소스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소스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
 - 실행물이나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코드를 복제해갈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코드가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

라이선스 분석 - 5. 특허권의 취급(제7조)

- GPL 조건의 SW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특허만을 자유 SW에 포함
 - ▶ SW특허의 인정 여부는 각국의 입법 또는 법해석에 관한 문제
-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
-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있어 본 라이선스가 부과되는 의무와 기타 다른 관련된 의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배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라이선스 분석 - 5. 특허권의 취급(제8조)

• 특허권에 대한 GPL-2.0의 내용

- ▶ 특허권자 자신이 특허기술을 구현한 SW를 GPL로 배포하였다면, GPL 서문이나 제7조의 해석상, GPL 조건을 준수하면서 해당SW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또는 특허 라이선스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해석
- ▶ SW에 제3자의 특허기술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가 모든 GPL 이용자에게 무상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SW를 배포 가능
- ▶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제각각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라이선스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지역적 제한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배포가 허가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제한조건은 본 라이선스의 일부로 간주(제8조)

라이선스 분석 - 6. 라이선스의 버전과 적용(제9조)

- 라이선스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없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 가능
-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any later version”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FSF에서 발생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
-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FSF가 공표한 어떤 버전을 적용해도 무방
-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배포 기준이 상이한 다른 자유 SW와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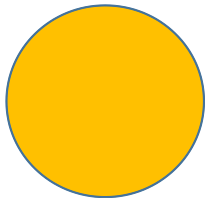
cf) 라이선스 양립성

		배포하고 싶은 프로젝트					
		GPLv2 only	GPLv2 혹은 이후 버전	GPLv3 혹은 이후 버전	LGPLv2.1 only	LGPLv2.1 혹은 이후 버전	GPLv3 혹은 이후 버전
Copy Code 형태로 사용	GPLv2 only	가능	가능	불가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불가
	GPLv2 혹은 이후 버전	가능	가능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	불가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LGPLv2.1 only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가능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LGPLv2.1 혹은 이후 버전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가능	가능	가능
	LGPLv3	불가	GPLv3로 변환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LGPLv3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가능	가능
Use a Library 형태로 사용	GPLv2 only	가능	가능	불가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2로 변환할 경우 가능	불가
	GPLv2 혹은 이후 버전	가능	가능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	불가	GPLv3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가능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GPLv3로 변환할 경우 가능
	LGPLv2.1 only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LGPLv2.1 혹은 이후 버전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LGPLv3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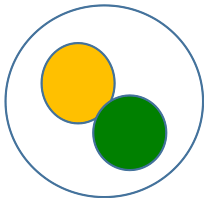
GPL-2.0의 경계 문제

- GPL-2.0에 규정된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s)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논란이 많은 문제
- 일반적으로 제약이나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의 의도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
 - ▶ 전세계 어느 법원도 GPL-2.0의 경계 문제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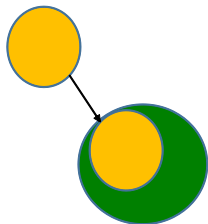
분쟁 소지의 경우들



공동저작물
(분쟁 소지 낮음)



결합저작물
(분쟁 소지 낮음)



2차적저작물
(분쟁 소지 높음)

-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자에게 일정한 권리 행사 가능
- GPL 경계문제는 오픈소스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인정여부와 비슷
 - ▶ 동일한 문제는 아님

관련 법리: 한국 vs. 미국

- 한국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이 인정되려면 ①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② 원저작물과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야 한다

- 미국

- 한국과 같음

- FSF

- 경계 문제의 최종 결정권이 법원에 있다는 입장

미국의 오픈소스 판례와 학설

-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 미국의 저작권법 제101조
 - ▶ 번역물, 편곡물, 극화물, 소설화물, 영화화물, 녹음물, 미술복제물, 축약물, 요약물,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이 개작, 변형 또는 각색된 형태와 같이, 기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
 - ▶ 전체로서 원저작물을 나타내는 편집적 수정물, 주석물, 퇴고물, 또는 그 밖의 수정물로 구성된 저작물
- 파생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을 금지시킬 수는 있지만, 결합저작물의 다른 구성 부분을 만드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음
 - ▶ GPL-2.0의 경계문제는 저작권법만으로는 파생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판단이 힘들
 - ▶ 법원마다 기준이 다름
 - ▶ 두 SW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두 SW는 별도의 저작물이 되고 오픈소스 저작권자는 그 유사한 SW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음
- SW에 파생저작물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가 아직 부족
- 아직 SW의 경계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학계의 명확한 판단기준 수립은 없음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오픈소스의 2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오픈소스를 기초로 하여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하여 만든 SW 저작물
-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함
-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
 -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 오픈소스의 경계문제와 직접적 관련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단순한 복제물로 평가되는 경우 수정에 따른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GPL이 적용된 오픈소스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 경우 해당 2차적 저작물 전체에는 GPL이 적용
 - 기존의 오픈소스에 새롭게 부가된 창작성 있는 부분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저작권이 인정됨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는 저작물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이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 범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1.25. 선고 99도863 판결
 -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2차적저작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저작물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도 수정자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만 권리 인정
 - ✓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 원저작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작성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은 해당조건이 만족되면 저작권 발생
 - ✓ 단, 허락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우리 저작권법 제5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2차적저작물이 작성되더라도 그에 포함된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

FSF의 의견

- FSF 의견은 기술 및 기능 중심적이라 법률 해석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 GNU FAQ 참고
 - 재단과 입장이 다른 저작권자도 있어 재단의 FAQ가 경계문제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 재단의 의견
 - GPL 코드와 동적/정적 연결은 경계 내에 속하는 코드의 단일 파생저작물을 생성하므로 GPL에 영향 받음
 - 파이프, 소켓 등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작용하는 SW는 파생저작물이 아니므로 GPL의 영향받지 않음
 - ✓ 프로그램 간의 통신의 의미가 아주 긴밀한 관계여서 복잡한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교환한다면, 통신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은 확장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셸 명령과 실행문을 통해서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GPL의 영향받지 않음
 - 사용자 공간은 커널 또는 언어 라이브러리에 적용되는 GPL의 경계 밖에 있어 GPL의 영향받지 않음

GNU FAQ

- <https://www.gnu.org/licenses/gpl-faq.html>
-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ggregate” and other kinds of “modified versions”? (#MereAggregation)
- “집합” 과 다른 종류의 “수정 버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집합)
 - “집합”은 동일한 CD-ROM이나 기타 미디어에 함께 배포되는 여러 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GPL은 다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무료가 아니거나 GPL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합체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각 프로그램의 개별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리를 사용자가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라이선스에 따라 집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두 개의 별도 프로그램과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는 법적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절한 기준이 통신 메커니즘(exec, 파이프, rpc, 공유 주소 공간 내 함수 호출 등)과 통신 의미(어떤 종류의 정보가 교환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 모듈이 동일한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됩니다. 모듈이 공유 주소 공간에서 함께 연결되어 실행되도록 설계된 경우 이는 거의 확실하게 모듈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조적으로, 파이프, 소켓 및 명령줄 인수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개별 프로그램 간에 사용되는 통신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통신에 사용될 때 모듈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통신의 의미가 충분히 친밀하고 복잡한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교환한다면 그것 역시 두 부분을 더 큰 프로그램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법

- SW는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많은 변수가 있음

- 단순한 버그 수정으로 기능 및 성능이 개선되었다면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많은 부분을 수정했는데 기능 및 성능이 별 차이없다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되느냐의 여부만으로는 오픈소스의 경계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론

- 2차적저작물 여부를 파악하는 실질적 유사성과 창작성을 기준으로 하되 원저작물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되 FSF의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음
- GPL 계열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도 소스공개 등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계 밖에 있고 싶다면 FSF가 명시적으로 밝힌 GPL이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

- 추가논의 사항

- 프로그램 간의 통신의 의미가 아주 긴밀한 관계여서 복잡한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교환한다면, 통신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은 확장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음. 케바케인가?
-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나?
- 소켓 통신을 하되 오가는 정보가 많은 경우는 문제 없나?

부록: GPL-2.0 라이선스 원문

라이선스 내용 분석 - Preambl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Version 2, June 1991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Everyone is permitted to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is license document, but changing it is not allowed.

Preamble

The licenses for most software are designed to take away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it. By contrast,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s intended to guarantee your freedom to share and change free software--to make sure the software is free for all its users. This General Public License applies to most of the Free Software Foundation's software and to any other program whose authors commit to using it. (Some other Free Software Foundation software is covered by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You can apply it to your programs, too.

When we speak of free software, we are referring to freedom, not price. Our General Public Licenses are designed to make sure that you have the freedom to distribute copies of free software (and charge for this service if you wish), that you receive source code or can get it if you want it, that you can change the software or use pieces of it in new free programs; and that you know you can do these things.

To protect your rights, we need to make restrictions that forbid anyone to deny you these rights or to ask you to surrender the rights. These restrictions translate to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you if you distribute copies of the software, or if you modify it.

For example, if you distribute copies of such a program, whether gratis or for a fee, you must give the recipients all the rights that you have. You must make sure that they, too, receive or can get the source code. And you must show them these terms so they know their rights.

We protect your rights with two steps: (1) copyright the software, and (2) offer you this license which gives you legal permission to copy, distribute and/or modify the software.

Also, for each author's protection and ours, we want to make certain that everyone understands that there is no warranty for this free software. If the software is modified by someone else and passed on, we want its recipients to know that what they have is not the original, so that any problems introduced by others will not reflect on the original authors' reputations.

Finally, any free program is threatened constantly by software patents. We wish to avoid the danger that redistributors of a free program will individually obtain patent licenses, in effect making the program proprietary. To prevent this, we have made it clear that any patent must be licensed for everyone's free use or not licensed at all.

The precise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follow.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GPL)

버전 2. 1991년 6월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이 라이선스 문서는 누구든지 원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으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자유free'라는 단어는 무료라는 글적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들은 당신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리고 원한다면 판매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면 얻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신이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당신에게도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당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수취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또한 수취인 역시 소스 코드를 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수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이 관련 조항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2) 본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그리고/혹은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각 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소프트웨어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수정되고 또다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우리는 수취인이 자신이 받은 소프트웨어가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야기된 어떤 문제도 원 저작자의 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아 결과적으로 본래 프로그램을 사유화(proprietary)시키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특허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라이선스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0조, 제1조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0.

This License applies to any program or other work which contains a notice placed by the copyright holder saying it may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is General Public License. The "Program", below, refers to any such program or work, and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Hereinafter,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 the term "modification".) Each licensee is addressed as "you".

Activities other than copying, distribution and modification are not covered by this License; they are outside its scope. The act of running the Program is not restricted, and the output from the Program is covered only if its contents constitute a work based on the Program (independent of having been made by running the Program). Whether that is true depends on what the Program does.

복제, 배포, 수정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

제0조.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 소유자가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른 배포를 허용한다는 고지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저작물에 적용된다. 아래에서 "프로그램"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저작물 모두를 가리키며,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은 해당 프로그램, 혹은 저작권법 내에서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파생한 저작물, 즉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후로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수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를 받는 사람은 "당신"이라고 칭한다.

복제, 배포, 수정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범위를 벗어난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다.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그것의 구성 여부는 원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

1.

You may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Program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You may charge a fee for the physical act of transferring a copy, and you may at your option offer warranty protection in exchange for a fee.

제1조.

당신은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전제로 한다: 분명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의 부재와 관련된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은 복제본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데 소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2조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 You must cause the modified files to carry prominent notices stating that you changed the files and the date of any change.
-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 If the modified program normally reads commands interactively when run, you must cause it, when started running for such interactive use in the most ordinary way, to print or display an announcement including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a notice that there is no warranty (or else, saying that you provide a warranty) and that users may redistribute the program under these conditions, and telling the user how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Exception: if the Program itself is interactive but does not normally print such an announcement, your work based on the Program is not required to print an announcement.)

These requirements apply to the modified work as a whole. If identifiable sections of that work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can be reasonably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then this License, and its terms, do not apply to those sections when you distribute them as separate works. But when you distribute the same sections as part of a whole which is a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distribution of the whole must be on the terms of this License, whose permissions for other licensees extend to the entire whole, and thus to each and every part regardless of who wrote it.

Thus, it is not the intent of this section to claim rights or contest your rights to work written entirely by you; rather, the intent is to exercise the right to control the distribution of derivative or collective works based on the Program.

In addition,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 파일을 수정할 때는 파일을 수정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에 명시해야 한다.
-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리를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방식으로 명령어를 읽어들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 책임이 없다는 사실 (보증을 설정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선스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예외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 자체가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 하지만 동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위의 조항들은 수정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원프로그램에서 파생한 저작물의 일부로서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의 배포에 대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부분들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가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된다.

이 조항의 의도는 전적으로 당신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파생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프로그램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 다른 저작물은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3조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which must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 b) Accompany it with a written offer, valid for at least three years, to give any third party, for a charge no more than your cost of physically performing source distribution, a complete machine-readable copy of the corresponding source code, to b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on a medium customarily used for software interchange; or,
- c) Accompany it with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as to the offer to distribute corresponding source code. (This alternative is allowed only for noncommercial distribution and only if you received the program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with such an offer, in accord with Subsection b above.)

The source code for a work means the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s to it. For an executable work, complete source code means all the source code for all modules it contains, plus any associated interface definition files, plus the scripts used to control compil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executable. However, as a special exception, the source code distributed need not include anything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in either source or binary form) with the major components (compiler, kernel, and so on) of the operating system on which the executable runs, unless that component itself accompanies the executable.

If distribution of executable or object code is made by offering access to copy from a designated place, then offering equivalent access to copy the source code from the same place counts as distribution of the source code, even though third parties are not compelled to copy the source along with the object code.

제3조.

당신은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파생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 a)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든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 c) 해당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하며, 또한 위의 b항에 따라 소스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수정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한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소스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경우로서,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행물이나 오브젝트 코드를 지정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스 코드가 오브젝트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4조, 제5조, 제6조

<p>4.</p> <p>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p>	<p>제4조.</p> <p>본 라이선스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수정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를 할 수 없다. 본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은 복제와 수정 및 서브라이선스 설정과 배포 등의 행위는 전부 무효하며, 이 라이선스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p>
<p>5.</p> <p>You are not required to accept this License, since you have not signed it. However, nothing else grants you permission to modify or distribute the Program or its derivative works. These actions are prohibited by law if you do not accept this License. Therefore, by modifying or distributing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you indicate your acceptance of this License to do so, and all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copying, distributing or modifying the Program or works based on it.</p>	<p>제5조.</p> <p>당신은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라이선스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배포할 권한은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본 라이선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프로그램(혹은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모든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와 관련된 본 라이선스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일겠다는 의미로 간주된다.</p>
<p>6.</p> <p>Each time you redistribute the Program (or any work based on the Program), the recipient automatically receives a license from the original licensor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Program subject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You may not impose any further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s' exercise of the rights granted herein. You are not responsible for enforcing compliance by third parties to this License.</p>	<p>제6조.</p> <p>당신이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서 파생한 모든 저작물)을 반복적으로 재배포할 경우,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수정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서 보장한 수취인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임의대로 추가할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인이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는다.</p>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7조, 제8조

7.

If, as a consequence of a court judgment or allegation of patent infringement or for any other reason (not limited to patent issues), conditions are imposed on you (whether by court order, agreement or otherwise) that contradict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they do not excuse you from the conditions of this License. If you cannot distribute so as to satisfy simultaneously your obligations under this License and any other pertinent obligations, then as a consequence you may not distribute the Program at all. For example, if a patent license would not permit royalty-free redistribution of the Program by all those who receive copies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you, then the only way you could satisfy both it and this License would be to refrain entirely from distribution of the Program.

If any portion of this section is held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particular circumstance, the balance of the section is intended to apply and the section as a whole is intended to apply in other circumstance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o induce you to infringe any patents or other property right claims or to contest validity of any such claims; this section has the sol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free softwar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y public license practices. Many people have made generous contributions to the wide range of software distributed through that system in reliance on consistent application of that system; it is up to the author/donor to decide if he or she is willing to distribute software through any other system and a licensee cannot impose that choice.

This section is intended to make thoroughly clear what is believed to be a consequence of the rest of this License.

제7조.

만약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 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본 라이선스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있어 본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의무와 기타 다른 관련된 의무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배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라이선스가 프로그램의 목적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에게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특허 라이선스와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을 아예 배포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이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본 조항의 유일한 목적은 공중 라이선스의 실행을 통해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배포 시스템에 대해 신뢰 있는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배포시스템을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나 기증자들의 권한이며, 일반 사용자들이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8.

If the distribution and/or use of the Program is restricted in certain countries either by patents or by copyrighted interfaces,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who places the Program under this License may add an explicit geographical distribution limitation excluding those countries, so that distribution is permitted only in or among countries not thus excluded. In such case, this License incorporates the limitation as if written in the body of this License.

제8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제각각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라이선스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지역적 제한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배포가 허가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제한조건은 본 라이선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9조, 제10조

9.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may publish revised and/or new version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from time to time. Such new versions will be similar in spirit to the present version, but may differ in detail to address new problems or concerns.

Each version is given a distinguishing version number. If the Program specifies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which applies to it and "any later version", you have the option of following the terms and conditions either of that version or of any later version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f the Program does not specify a version number of this License, you may choose any version ever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제9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any later version)"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10.

If you wish to incorporate parts of the Program into other free programs whose distribution conditions are different, write to the author to ask for permission. For software which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we sometimes make exceptions for this. Our decision will be guided by the two goals of preserving the free status of all derivatives of our free software and of promoting the sharing and reuse of software generally.

제10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선스와 배포 기준이 상이한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한다.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파생한 모든 저작물을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두 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제11조, 제12조

<p>NO WARRANTY</p> <p>11. BECAUSE THE PROGRAM IS LICENSED FREE OF CHARGE,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p>	<p>보증의 부인 (제11조, 제12조)</p> <p>제11조.</p> <p>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는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당신에게 인수된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p>
<p>12.</p> <p>IN NO EVENT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WILL ANY COPYRIGHT HOLDER, OR ANY OTHER PARTY WHO MAY MODIFY AND/OR REDISTRIBUTE THE PROGRAM AS PERMITTED ABOVE, BE LIABLE TO YOU FOR DAMAGES, INCLUDING ANY GENERAL, SPECIAL,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USE OR INABILITY TO USE THE PROGRA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DATA OR DATA BEING RENDERED INACCURATE OR LOSSES SUSTAINED BY YOU OR THIRD PARTIES OR A FAILURE OF THE PROGRAM TO OPERATE WITH ANY OTHER PROGRAMS), EVEN IF SUCH HOLDER OR OTHER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p> <p>END OF TERMS AND CONDITIONS</p>	<p>제12조.</p> <p>저작권자나 배포자가 손해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의한 요청이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위에서 허가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배포한 제3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인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p> <p>이상 조건과 규정의 끝</p>

라이선스 내용 분석 – 적용하는 방법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If you develop a new program, and you want it to be of the greatest possible use to the public,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make it free software which everyone can redistribute and change under these terms.

To do so, attach the following notices to the program. It is safest to attach them to the start of each source file to most effectively convey the exclusion of warranty; and each file should have at least the "copyright" line and a pointer to where the full notice is found.

One line to give the program's name and a brief idea of what it does.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Also add information on how to contact you by electronic and paper mail.

If the program is interactive, make it output a short notice like this when it starts in an interactive mode: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Gnomovision comes with ABSOLUTELY NO WARRANTY; for details type `show w'. This is free software, and you are welcome to redistribute it under certain conditions; type `show c' for details.

The hypothetical commands `show w' and `show c' should show the appropriate parts of the General Public License. Of course, the commands you use may be called something other than `show w' and `show c'; they could even be mouse-clicks or menu items—whatever suits your program.

You should also get your employer (if you work as a programmer) or your school, if any, to sign a "copyright disclaimer" for the program, if necessary. Here is a sample: alter the names:

Yoyodyne, Inc., hereby disclaims all copyright interest in the program 'Gnomovision' (which makes passes at compilers) written by James Hacker.

signature of Ty Coon, 1 April 1989

Ty Coon, President of Vice

This General Public License does not permit incorporating your program into proprietary programs. If your program is a subroutine library, you may consider it more useful to permit linking proprietary applications with the library. If this is what you want to do, use the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instead of this License.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러한 조건들을 적용하는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라이선스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한다.>

Copyright (C) <연도> <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소: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당신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에 의한 대화형 구조로 되어 있다면, 대화형 방식이 실행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 연도 / 저작자명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show w' 명령어를 입력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배포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how w'와 `show c' 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가상의 명령어이다. 물론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로 사용해도 상관 없으며, 심지어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 등 당신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만약 당신이 학교나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필요할 경우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가능하다. (아래 예로 사용된 이름들은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된다.) Yoyodyne, Inc.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컴파일러에서 패스를 생성하는)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1989년 4월 1일

서명: Ty coon 의 서명

Yoyodyne, Inc., 부사장: Ty Coon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버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사유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면 된다.

ETRI Open Source Center

